

2023. 11 #2

머로우 소달리 코리아 뉴스레터

2024 GLASS LEWIS 지침 개정

세계 양대 의안분석 회사 중 하나인 Glass Lewis 가 16 일 밤, 2024 년 주주총회에 적용할 개정 지침을 발표했고, 한국 지침 또한 포함되었습니다. 11 월 두 번째 뉴스레터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과 이에 대한 머로우 소달리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 여성이사 비율
 - 자본시장법에 따라 특성 성으로만 이사회를 구성해서는 안 되는 자산규모 2 조 원 이상의 기업은, 기존에 최소 1 인의 다른 성별의 이사를 선임하도록 한 것에서 나아가 소수 성별의 비중이 10% 미만일 때에 추천위원회 위원장에 반대 권고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23 년 지침에서는 “다양성” 문제만으로는 반대 권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 또한 삭제되고, 다양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다양성 확보 계획이나 미충족 사유 등을 세심하게 살핀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규모가 10 인을 초과하는 자산규모 2 조 원 이상 기업의 경우 10%의 다양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추천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반대 사유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반대 권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양성 확보 계획이나 설득력 있는 미충족 사유를 함께 공시해야겠습니다.
- 감사보고서 제출
 - Glass Lewis 는 보고서 분석 시점에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 재무제표 승인 안건과 감사위원회 위원장 재선임 안건에 반대하는 지침을 갖고 있는데, 국내 대부분의 기업이 현실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어 반대 권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최근 3 년 동안 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재무제표 승인 안건 및 감사위원장 선임 안건에 찬성하고, 비적정 의견이 있는 경우에만 기존처럼 사전에 제출되지 않으면 반대를 권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한편, 기존의 지침은 실현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컸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반대 권고를 받아들여야 했던 국내 기업들에게 반가운 개정이 될 것입니다. 감사보고서 제출을 빨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해당 지침에 따른 반대 권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출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인데 이 또한 권장되지 않는 관행이므로 기존 지침의 의도와 무관하게 좋은 기업지배구조 관행과 상충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자체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승인 안건에 반대해 온 투자자들이 일부 있는데 이번 개정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과거 주주총회에서 감사보고서 미제출을 사유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투자자들이 있다면 그들과 이번 Glass Lewis 의 개정에 대해 주주총회 전에 사전적으로 논의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기후변화 대응
 - KOSPI 200 구성종목 중에서 SASB 기준 탄소배출량이 재무적으로 중대한 산업에 속한 기업, 그리고 Glass Lewis 의 자체적인 판단 하에 기후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기업에 대하여 TCFD 공시 수준과 기후 관련 이슈에 대한 이사회 책임과 관련된 공시 수준을 평가하고,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이사에 반대하는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 지난 2021 년, ISS Climate Policy 지침 개정을 앞서 뉴스레터(2021 년 10 월)에서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 이와 비슷한 접근이라고 판단됩니다. TCFD 공시 수준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뤄질지, 그리고 기후 관련 이슈에 대한 이사회 책임과 관련된 공시 수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디만, Glass Lewis 가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들은 최소한 TCFD 공시 수준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반대 권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완전전자주주총회 도입
 - 완전전자주주총회를 정관에 도입하는 경우 찬성을 권고한다는 지침이 추가되었습니다.
 - 완전전자주주총회의 도입 내용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통과까지 아직 절차가 남아있고 변경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지만, 곧바로 다음 주주총회에 도입될 가능성을 대비해 지침을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전자주주총회의 경우 접근성, 질의 등 현장주주총회와 동일하게 주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도입 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등 지침이 추가로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 정보보안 위험(Cyber Risk)에 대한 감독
 -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하고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정보보안 위험에 대한 부실한 감독 또는 부실한 공시를 사유로 관련된 이사회에 반대를 권고할 수 있다는 지침이 추가되었습니다.
 - 정보보안 위험에 대한 감독 또는 공시 수준을 사유로 반대 권고가 이뤄지지는 않기 때문에, 해당 지침의 도입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단, 개인정보유출 등 중대한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기업가치가 훼손된 사례에서는 해당 지침이 곧바로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정보보안 사고 및 수습,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등에 대해 공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공공기관의 근로자 대표의 독립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상임이사 후보로 주주총회에 상정된 근로자를 사내이사 혹은 사외이사, 혹은 비상임이사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 회사의 분류를 그대로 따른다는 지침과, 해당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사회 독립성을 사유로 반대 권고하지 않는다는 지침이 추가되었습니다.
 - Glass Lewis 는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이사들의 독립성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사회 독립성 비율은 산출하는데, 자산 2 조 원 이상 기업의 경우 Glass Lewis 자체 기준에 따른 독립성 비율이 과반수에 못 미치게 되면 독립적이지 않은 이사 및 이사회 구성에 책임이 있는 추천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반대를 권고합니다. 이번 지침의 추가는 이러한 사유의 발생으로 독립적이지 않은 이사를 반대할 때에 근로자 대표 비상임이사 후보는 면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 비상임이사 후보를 독립적이라고 판단할지, 독립성 비율을 산출할 때에는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적시되지 않았으므로, 해당되는 회사는 주주총회에 앞서 Glass Lewis 와의 인게이지먼트를 통해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Glass Lewis의 지침 개정은 국내 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보다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가령, 감사보고서 관련 지침에서 표현하는 최근 3년이 다가오는 주주총회의 승인 대상인 직전회계년도를 포함하는지, 해당 기간과 재선임 대상인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함께 고려되는지, 앞서 언급한 근로자 대표 비상임이사가 독립성 비율 산출에 포함되는지,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한 기대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기후 이슈 또는 정보보안과 관련된 이사는 어떤 이사를 지칭하는지 등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12월 13일, 머로우 소달리가 Glass Lewis와 함께 개최하는 “2024년 한국 주주총회 시즌 프리뷰”를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머로우 소달리는 2021년부터 매해 의안분석 회사들과 함께 주주총회 대비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한국 ESG 기준원과 한국 ESG 연구소 등 국내 자문사들 또한 참여할 예정이니, Glass Lewis의 개정 지침을 포함해 의안분석 회사들의 지침에 관심이 있으신 경우 웨비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및 초대장은 준비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뉴스레터 혹은 머로우 소달리에 대해 문의가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다룬 개정 내용 이외에 영문 공시에 대한 설명 추가 등 추가 변경 사항을 포함한 Glass Lewis의 개정 지침 전문은 [여기서\(링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BOUT MORROW SODALI

머로우 소달리(Morrow Sodali)는 對주주 서비스 및 기업지배구조 전략 자문 서비스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경영활동에 대한 투자자들의 지지를 극대화시키는 데 최적의 동반자입니다. 머로우 소달리는 기업지배구조 자문에서부터 ESG 컨설팅, 주주 소통 및 관여활동 지원, 자본시장 정보제공,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대행, 주주행동주의 자문, M&A 등 구조개편 자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통해 이사회 및 경영진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머로우 소달리는 효과적인 지배구조 공시, 주주와의 신뢰 관계 구축, 전략적 목표에 대한 지지 기반 극대화를 통해 고객사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뉴욕과 런던에 있는 본사를 포함하여 주요 자본시장 곳곳에 지사를 두고 있는 머로우 소달리는, 전 세계 약 80 개국에서 세계 최대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1,000 여 개 고객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 적합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이는 업계에서 머로우 소달리가 유일합니다.

OUR SELECTED CLIENTS

머로우 소달리는 2019년 10월 한국사무소를 개소하였으며 2021년 6월 법인 전환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이래 3년 남짓한 기간 동안 국내 유수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SAMSUNG

 신한금융그룹

 SK telecom

 KB

 CELLTRION

 HYUNDAI MOBIS

 kt

금호석유화학

 KT&G

 IDL E&C



대신증권
Daishin Securities

 SK square

 우리금융그룹

 JB금융그룹

 DB

ORANGELIFE 

 SM ENTERTAINMENT

 화 성

NAVER

DAELIM

 OSSTEM[®]
IMPLANT

HELIUMITH

 DB하이텍

더 많은 보고서와 인사이트를 MORROW SODALI 홈페이지 (<https://morrrowsodali.com/insight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TACTS

<p>정성엽 <i>대표</i></p> <p>s.chung@morrowsodali.com T. 02 6001 3336 M. 010 8170 1000</p>	<p>방문옥 <i>상무, 기업지배구조</i></p> <p>m.bang@morrowsodali.com M. 010 5744 0577</p>	<p>Kelly Kim <i>Senior Advisor</i></p> <p>k.kim@morrowsodali.com M. 010 2617 2242</p>	<p>장우진 <i>매니저</i></p> <p>w.jang@morrowsodali.com M. 010 9973 4711</p>	<p>최유신 <i>매니저</i></p> <p>y.choi@morrowsodali.com M. 010 9676 8325</p>
<p>Danny Hunt <i>COO APAC</i></p> <p>d.hunt@morrowsodali.com M. +61 449 677 550</p>	<p>Jana Jevcakova <i>Head of ESG Int'l.</i></p> <p>j.jevcakova@morrowsodali.com M. +61 452 061 779</p>	<p>Andrew Vasey <i>Director</i></p> <p>a.vasey@morrowsodali.com M. +81 3 4589 4781</p>	<p>Liz Park <i>Manager</i></p> <p>l.park@morrowsodali.com M. +61 424 646 234</p>	

Offices

<p>NEW YORK 509 Madison Avenue, Suite 1206 New York, NY 10022 USA</p>	<p>LONDON 103 Wigmore St, Marylebone, W1U 1QS, London United Kingdom</p>	<p>SYDNEY Level 24, 68 Pitt Street Sydney, NSW 2000 Australia</p>
<p>BUENOS AIRES Cap. Gral. Ramon Freire 1865 CABA – 1428 Buenos Aires Argentina</p>	<p>FRANKFURT Taunustor 1 60310 Frankfurt am Main Germany</p>	<p>HONG KONG 2/F, the Hive Sheung Wan, 33-35 Hillier Street, Sheung Wan Hong Kong</p>
<p>MADRID Calle de Almagro 3 28010 Madrid Spain</p>	<p>ROME Via XXIV Maggio, 43 00184 Rome Italy</p>	<p>TOKYO Lattice Aoyama Sq. 2F, 1-2-6 Minami- Aoyama, Minato-ku, Tokyo, 107-0062 Japan</p>
<p>MELBOURNE Suite 32, 367 Collins Street Melbourne, VIC 3000 Australia</p>	<p>PARIS 29-31 Rue de Courcelles 75008 Paris France</p>	<p>PERTH Level 9, 190 St Georges Terrace Perth, WA 6000 Australia</p>
<p>SAO PAULO Av. Brg. Faria Lima 1485, 1º e 2º andares Itaim Bibi, São Paulo - SP, 01452-002 Brazil</p>	<p>SEOUL 37F, 517, Yeongdong-daero, Gangnam-gu Seoul, 06164 Republic of Korea</p>	<p>STAMFORD 333 Ludlow Street, 5th Floor, South Tower Stamford, CT 06902 USA</p>
<p>TORONTO Brookfield Place, 181 Bay Street, Suite 2860 Toronto, Ontario M5J 2T3USA Canada</p>	<p>Local partners BEIJING MEXICO CITY SAO PAULO</p>	